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단52024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정일배

변 론 종 결 2023. 11. 23.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16,500,000원에 대하여 2022. 11. 26.부터, 나머지 16,500,000원에 대하여 2022. 12. 26.부터 각 2023.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 3.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E대학교 F캠퍼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사용될 H빔을 비롯한 중고 가설재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2. 3. 4.부터 2022. 9. 10.까지 8개월로 정하여 임대 및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물품대금 및 물품반납 완료 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22. 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물품을 임대 및 판매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2. 8. 31.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3,3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D은 2023.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건에 대하여 토목, 골조공사 업체인 D에서 현장공사비에서 받을 미수금 중에서 일금 3,300만 원을 D의 하청업체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임회자로 날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대료 등을 전부 지급받고도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정산금 명목으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 사이에 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22. 8. 31.경 임대 및 판매, 반환된 물품, 수리비, 운반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3,300만 원을 정산하였을 뿐 아니라 2023. 1. 27.경에는 피고의 입회 하에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D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고는 D 사이의 최종 정산금채무는 오로지 D만 청구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및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물품대금 및 물품반납 완료 후 발생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여 D의 채무를 보증한 이상 이 사건 확인서에 입회자로서만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00만 원 및 그 중 1,65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2. 11. 26.부터, 나머지 1,650만 원에 대하여 2022. 12. 2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